

# 2019년도 자치기구 면대면 감사 오리엔테이션

한남대학교 전체학과 면대면 감사를 위한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제 35대 중앙감사위원회



# 목 차

- 01 감사 방식
- 02 감사 관련 조항
- 03 감사 메뉴얼
- 04 필요한 자료
- 05 감사 결과에 따른 방안
- 06 감사 순서 추천
- 07 질의응답



이

감사 방식, 일정



# 01 감사 방식

- ◆ 각 자치기구 모든 부서의 임원이 중앙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위원에게 면대면 감사를 받는다.
- ◆ 메뉴얼에 관련 공통 질문과 세부질문으로 감사
- ◆ 감사자료는 감사 진행 전 미리 제출



# 01 감사 일정

## ◆ 감사자료 제출

- 9월 19일(목) 18:30~ 19:00 총대의원회 사무실

## ◆ 감사 일시

- 9월 23일(월) ~ 10월 8일(화) 18:30 ~



02

# 감사 관련 조항



# 02 감사 관련 조항

## ● 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목적)

- 이 세칙은 한남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학생회 사업의 공개와 올바른 평가를 통해 학생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총대의원회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 제 2 장 감사위원회

### • 제 4 조 (구성)

1. 중앙감사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대학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대학 소속 상임대의원이 된다.

### • 제 5 조 (업무 및 권한)

1. 감사 일정 확정 및 시달권
2. 감사 주체 선정권
3. 감사 시행 결과에 대한 징계권
4. 재감사 시행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02 감사 관련 조항

- 제15조 (의장)

- 2. 의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해당자치기구에 그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61조 (결산)

- 각 기구는 매 학기마다 결산안을 작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에 보고하며 감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제62조 (감사)

- 1. 총대의원회는 결산승인 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총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급 자치기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3조 (예산동결권)

- 총대의원회에서는 각 자치기구의 부당한 운영이 있거나 제61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8조 제11항에 의거, 예산안 집행을 보류 할 수 있다.





# 02 감사 관련 조항

## ● 제 5 장 징계

### • 제 19 조(시행사유)

1. 중앙 감사위에 제출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중앙 감사위 위원 과반수 이상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2. 감사결과에 대한 피 감사주체의 이의제기가 중앙 감사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3. 기타 중앙 감사위 위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 제 23 조(징계의 대상)

1. 감사 자료가 미 제출 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2. 피 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하였을 경우
3. 예산 감사에 있어서 예산 지출의 오차가 발견되었거나 예산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 되었을 경우
4. 사업의 집행이 회칙에 어긋났을 경우
5. 기타 본 세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 01 감사시행세칙

- 제 24 조(징계의 내용) 징계는 다음의 9단계로 구분되며 누적 적용된다.

## 1. 주의

- 1) 감사자료가 미 제출 되었을 경우
- 2) 감사자료가 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 3) 감사자료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 4) 피 감사주체의 답변이 불성실했을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2. 경고

- 1) 피 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하였을 경우
- 2)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 3) 주의에 해당되는 항에 누적 적용되었을 경우

## 3. 예산삭감(10%이내)

## 4. 예산집행정지(6주, 8주, 무기한)

## 5. 집행부에 대한 탄핵 발의

## 6. 감사대상기구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 7. 감사대상기구의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의 발의

## 8. 감사대상기구의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

## 9. 피 감사주체에 대한 학칙에 의한 처벌 요구



**03**

---

# 감사 메뉴얼



# 03 감사 공통 메뉴얼



감사기준		배점	배점사유	비고
학생회 활동사항	활동사항의 인지도		공약 사항 인지	
			부서별 임원 역할 인지	
			행사 목적 파악 여부	
	활동사항 세부계획		한 해의 행사 계획 숙지 여부	
			홍보 방법	
			계획에 따른 행사 진행 여부	
			증빙 자료 첨부	
			안전대책	
			기획안, 회의록 지참 여부	
	활동사항 달성도		공약 사항 달성 여부	
			행사 진행시 임원들의 역할 수행(분담)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	

**04**

---

# **필요한 자료**



# 04 필요한 자료

## ◆ 사무

1. 금전출납부(통장, 카드, 사무보고서)
2. 예상 사용의 타당성 및 연간 예산 분배
3. 면대면 감사 전날까지의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면대면 감사 때 제출



# 04 필요한 자료

## ◆ 사무 감사 진행방식

- ✓ 금전출납내역서와 영수증,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예산사용의 타당성과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검토
- ✓ 예산사용이 총대의원회 가이드라인 기준의 적합 하는지 여부
- ✓ 사무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감사 날짜의 전일까지 기재됨을 확인하며,  
기타 수익사업의 활용도 부분은 수익사업의 실시여부에 따라 차등 평가됩니다.



# 04 필요한 자료

## ◆ 기획

- 연간사업 계획표, 기획안 등 부가적인 기타 서류 필수 지참
- 학과 행사 기획 타당성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 ◆ 정책

- 상세 공약 사항( 이행 자료 ), 공약 타당성





05

# 감사 결과에 따른 방안



## 05 감사 결과에 따른 방안

- ◆ 면대면 감사 결과에 대해 따로 공고한다.
- ◆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 하에 진행된다.
- ◆ 기타 결과 및 채점은 중앙감사위원회의 확인과 의결 하에 진행된다.

06

감사 순서 추첨



**07**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제 35대 중앙감사위원회

